

# 서울특별시 상수도 Senior-특새안전지원단 운영 규정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조사과), 02-3146-164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재난안전 관리강화를 위한 ‘상수도 Senior-특새안전지원단(이하 ‘안전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지원단"이라 함은 「상수도 Senior-특새안전지원단 운영계획(총무과-2552호, '22. 2. 22.)」에 따라 구성한 현장점검반을 말한다.
2. "안전지원관"이라 함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안전지원단으로 위촉한 자를 말한다.
3. "상수도 현장부서"라 함은 상수도사업본부 및 산하 기관을 말한다.
4. "현장실습장"이라 함은 강북아리수정수센터 내에 구축 중인 실습장을 말한다.
5. "해당 사업소"라 함은 안전지원관이 점검 등 실질적인 활동을 하는 수도사업소를 말한다.

**제3조(직무)** 안전지원단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중대재해 예방과 관련, 공사장 등 선제적 위험시설물 점검 후 개선안 도출
2. 수돗물 생산·공급·안전 등 상수도 발전을 위한 제반 사항에 관한 정책 제언 및 자문
3. 현장실습장 구축 관련 자문 및 실습장 운영시 실습강사 활동
4. 그 밖의 상수도 안전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등)** ① 안전지원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하여 안전지원관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안전지원단장은 안전지원단의 직무를 총괄하며, 안전지원관 중에서 호선한다.

③ 안전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자 중에서 본부에서 선발하여 위촉한다.

1. 상수도 현장부서 10년 이상 근무한 퇴직공무원
2. 수돗물 생산, 공급, 유지관리 등 상수도 현장 지식이 풍부한 유경험자
3. 각종 사업에 대한 엄정하고 꼼꼼한 심사 및 이행실태 조사가 가능한 자

④ 안전지원관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2. 12. 31.까지로 하며, 본부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에서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활동이 곤란한 경우
2.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태만, 허위, 기타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사적인 목적에 이용하거나 타인에 제공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이득을 얻게 한 경우
5. 본인이 희망하거나 그 밖에 단원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조(현장점검)** ① 안전지원단은 제2조(직무)에 따라 해당 사업소의 상수도 위험시설물 및 공사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매월 2회(둘째주, 넷째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단, 정기회의가 있는 달은 현장점검을 1회(둘째주)만 실시할 수 있다.

- ② 안전지원단은 해당 사업소와 사전 협의를 거쳐 현장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되 담당자가 간과할 수 있는 사각지대 위주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 ③ 안전지원단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소에 현장출입, 인력 및 차량 지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안전지원단은 현장점검을 완료한 후에는 <붙임 1>의 현장점검표를 작성하여 본부 안전조사과장과 해당 사업소 시설관리과장에게 점검 익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6조(소통회의)** ① 안전지원단 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과 관련하여 분기별(3월, 6월, 9월, 12월 마지막 수요일)로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시 안전지원단장의 요구로 개최할 수 있다.

1. 수돗물 생산, 공급, 유지관리, 부과징수, 첨단 스마트 상수도 제반분야에 대한 방향 제시
2. 현장 점검시 체감된 개선사항 및 미래 상수도 발전 개선방안 제안
3. 내실있고 실효성 있는 현장실습장 구성을 위한 제안

- ② 안전지원단 의견제출은 의견제출자의 성명, 현황·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명시하여 <붙임 2>의 의견제출문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안전조사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③ 안전지원과장은 의견제출 과제에 대해 검토·처리한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안전지원단 현장점검 및 소통회의에 참석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안전지원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지원단 회의를 거쳐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정한다.

**제9조(기타)**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붙임1-1】

## 현장 점검표 [배수지·아리수올림터]

사업소명	(                    ) 수도사업소	점검일자	'22년    월    일
점검장소		점    검    자	

구    분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비    고
<b>배관 및 변류상태</b>	관랑실 내 배관 및 변류 부식상태		
	상수도관 관받침 및 지지대 안정 상태		
	강관 용접부 도장 및 부식상태		
	주철관 관로 및 이음부 부식상태		
	상수도관 누수발생 여부		
<b>조명시설</b>	램프의 점등상태(부점등 여부)		
	등기구 유지(청소) 상태		
	소등(에너지절약) 실시 여부		
<b>배수시설</b>	구조물내로 내·외수 유입여부		
	자동 배수 모터펌프 작동여부		
	우수배수로 준설 및 파손여부 등		
	배수펌프 동작상태		
<b>구    조    물</b>	건축, 토목 구조물 관리상태		
	구조물 균열, 파손, 누수등 시설물 안전상태		
	경계 울타리 관리상태		
	방범설비(헨스, 시건장치) 상태		
	항 내부 출입계단 난간 상태		
	환풍기 등 환기시설 관리상태		
	배수지 수위계, 수질측정장치 관리상태		
	시설물내 유리창 방풍관리 상태		
<b>사면보호</b>	배수지주변 법면 및 절개지 등 안전상태		
	옹벽 및 축대 등 균열 파손여부 등		
<b>위생안전 관리 상태</b>	배수지 환기구, 환기창 등 외부 오염물 침입 차단장치 설치 상태		
	외부 오염수의 정수지 유입 가능성		
<b>특이사항 (개선사항)</b>			

붙임 : 점검사진 1부.

【붙임1-2】

## 현장 점검표 [현수관로]

사업소명	(                    ) 수도사업소	점검일자	'22년    월    일
점검장소		점검자	

상수도시설	구경		노출연장		재질		부설 년도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관체 및 피복 결함 여부							
관 보온상태							
밸브 등 부속시설 상태							
관로지지 등 안전시설 상태							
점검통로 상태							
점검 사진		붙임					
특이사항 [개선사항]							

붙임 : 점검사진 1부.

【붙임1-3】

## 현장 점검표 [공동구]

사업소명	(                    ) 수도사업소	점검일자	'22년    월    일
점검장소		점검자	

상수도시설	구경	노출연장	재질	부설도
구분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b>상수도관로 등 상태</b>	상수도관 누수발생 유무			
	밸브류 작동 등 상태			
	관로의 도복상태, 녹발생 및 노후 상태			
	관로 명판 부착 상태			
<b>부속시설</b>	관 지지대 상태			
	배수시설 상태			
	관련기관 비상연락망 부착 상태			
<b>점검사진</b>	붙임			
<b>특이사항 [개선사항]</b>				

붙임 : 점검사진 1부.

[붙임1-4]

**현장 점검표 [지하철 및 공사장 내 노출 상수도관]**

사업소명	( ) 수도사업소	점검일자	'22년 월 일
점검장소		점검자	

구분	구경	노출연장	재질	부설년도
	점검항목	점검결과	점검항목	점검결과
상수도관로 등 상태	관외부(도장)상태		관 보온 상태	
	이음부 보강 (곡관포함)		신축관보강상태	
	고무판 여부		관 매달기 상태 (수평, 수직)	
	관 지지대 설치 상태		와이어 상태	
	누수징후		점검통로	
	노출밸브		기타	
긴급사항 발생 시 대처사항	비상연락망 비치여부		상수도현황판 비치여부	
	누수사고시 상황도 비치(제수변실 표시여부)		제어밸브키 비치여부	
안전관리부	계 측 기		현수관로 표찰	
	안전관리계획		안전점검 시행여부	
특이사항 (개선사항)				

붙임 : 점검사진 1부.

【붙임1-5】

## 현장 점검표 [도·송수 관로]

관리부서	( )수도사업소	점검장소	( )정수장수계	점검일시	'22년 월 일
관로재질	관로구경		부설년도	부설연장	점검자

구분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b>관로</b>	관부설환경의 변화유무 (노출, 침하 등)		
	관보호시설상태 (노출관로)		
	방식설비 이상 유무		
	관로 표지판 설치 상태		
<b>밸브실</b>	각종 밸브실 손상 여부 (균열 등)		
	관체 및 밸브 누수여부		
	관, 밸브 부식 및 도복장 상태		
<b>점검사진</b>	붙임		
<b>특이사항 [개선사항]</b>			

붙임 : 점검사진 1부.

**[붙임1-6]**

**현장 점검표 [상수도 공사장]**

사업소명	( ) 수도사업소	점검일자	'22년 월 일
공사명		주요공정	
공사위치		점검자	

구분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작업준비	현장대리인 및 품질관리자 배치		
	근로자에게 당일 작업계획 및 안전 교육 시행		
	근로자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의 복장상태 안전모:현장소장(녹색), 감리(파란색), 근로자(흰색)		
주변안전	공사 및 교통안내표지판 설치		
	싸인보드카, 에어탑 등 안전시설 설치		
	교통정리원, 안전원,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굴착작업	확인굴착(인력) 시행		
	굴착면, 흙막이 상단에 토사, 자재, 장비 등 미적치		
	굴착 깊이 1.5m이상일 경우 흙막이 지보공 설치		
	흙막이 지보공에 사용되는 재료의 적정성		
기계장비	유도자 및 신호수 배치		
	작업반경내 근로자 및 일반인 출입금지 조치		
	용접작업 장소에 인화성, 가연성 물질 격리 조치		
자재관리	상수도 직관 관마개 설치		
	자재가 움직이지 않도록 받침목 설치		
	전반적인 자재 관리 상태(피복상태 등)		
기타	철거자재(노후관) 현장 방치 유무		
	근로자 편의시설(캠핑카) 배치 및 적정 사용		
기타 시설 개선 사항			

붙임 : 점검사진 1부.



【붙임1-7】

**[점검 사진]**

조치 전	조치 후(해당 사업소에서 작성)
00배수지 스틸그레이팅 손괴	00배수지 스틸그레이팅 정비완료

【붙임2】

## 의견 제출문

안 건 :

일 시 : 2022. . .

논의사항

구 분	주 요 내 용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기타의견	

의견제출자 : 안전지원관 성명 [서명]